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0 선고 2019가단51692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1. 6. 18.

판 결 선 고 2021. 8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4,113,635원 및 그 중 173,399,633원에 대하여 2019. 5. 17.부터 2019. 7. 30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신현일

별지